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열람·교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신청이 가능한 금융회사 범위 지정
(안 제93조의2, 안 별표 3 신설)
- 부동산거래 등을 위해 해당 건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도입(2022. 12. 13., 출입국관리법 개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지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2(금융회사) 법 제88조의3제2항제3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6월 13부터 시행한다.

금융회사의 범위(제93조의2 관련)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6.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7.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8.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9.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10.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1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1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
1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와 정리금융기관
17.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은행
18.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지점과 대리점
1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0.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1.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2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2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2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26.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27.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28.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2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3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93조의2(금융회사) 법 제88조의 3제2항제3호 다목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란 별표 3과 같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연 락 처	(02) 2110 - 4116